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4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무과), 02-970-6023

전부기	개정 2013. 2.28.	개정	2013.	6. 21.		개정	2013.	8.	30.
개정	2014. 1. 22.	개정	2014.	3. 31.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6. 29.	개정	2016.	6. 15.		개정	2016.	11.	29.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9. 3.		개정	2019.	7.	22.
개정	2020. 2. 28.	개정	2020.	3. 18.		개정	2020.	8.	31.
개정	2021. 7. 2.	학칙기	개정 20	021. 10.	1.	개정	2021.	12.	10.
개정	2022. 4. 20.	개정	2022.	8. 31.		개정	2023.	5.	12.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7. 22.)
 - ②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인 일반전임교원, 교육공무원인 산학협력전임교원, 정년트랙기금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9. 3.)
 - ③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객원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4. 6. 15., 2019. 7. 22.)
 - ④ 교원은 맡은 업무에 따라,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한다.
 - ⑤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다만, 강사는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22.)
- 제3조(적용) 교원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4조(교원의 소속 등) 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될 수 있다.
 -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원을 소속 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제1절 대학인사위원회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 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며,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1. 29.)
 - ④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⑦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직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 정 2016. 11. 29.)
 -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⑧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되었던 사람이 임용기간의 만료로 제7항에 따라 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용기간 중 제6조제3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 ⑨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 ① 대학인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를 포함)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31)

제2절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 제6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직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에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 ④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 서 제외한다.

제3절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

- 제7조(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 ① 명예교수 추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명예교수추 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 일반대학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 ③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에서는 명예교수로 추천된 사람의 인격·덕망, 교육상의 업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심의한다.
 - ④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절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

- 제8조(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 ① 대학내 성별 균형 임용에 대한 공론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직한다.
 - ③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 양성평등 채용계획 수립

- 2. 대학 구성원간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 조정
- 3. 양성평등조치계획 실적 점검 등
- ④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절 공적심사위원회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서훈·표창 대상 교육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일반대학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부 포상대상자의 공적
 - 2. 총장 표창대상자의 공적
 -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절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제10조(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둔다.
 - ②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직한다.
 - ③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따른 상통직 경력인정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7절 채용관리위원회 (개정 2022. 8. 31.)

제10조의2(채용관리위원회) ① 공개채용의 심사과정 또는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채용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 자가 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채용관리위원회는 심사위원 또는 지원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총장이 공정성 여부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채용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특정분야 심사절차 속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조치방안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8. 31.)

제8절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신설 2023. 5. 12.)

- 제11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①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연장 여부 승인을 위해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직한다.
 - ③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위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공무상질병휴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제척된 사람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9절 회의관리 등 (신설 2022. 8. 31.)

- 제12조(제척) 위원회 위원 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2명 이상의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15조(개폐 등) ①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위원회 관련 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일반전임교원과 산학협력전임교원 (개정 2018. 9. 3.)

제1절 신규임용

- 제16조(신규임용) ① 총장은 연구실적, 강의능력, 산학협력능력이 우수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 ② 신규임용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 2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③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용발령과 동시에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신규임용 자격) ① 전임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전임교원은 영어강의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전임교원의 자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경력환산율은 별표 1과 같다
 - ④ 산학협력전임교원은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 9. 3.)
- 제18조(신규임용 절차)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한 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및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전문분야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의 연구업적 또는 산학협력능력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3. 5. 12.)
 - ②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에 따라 지원 마감일 전 15일 이상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신규임용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신규임용 되는 전임교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수 : 3년 이내
 - 2. 부교수 : 6년 이내

- 3. 조교수 : 5년 이내. 다만,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내 (개정 2017. 12. 29.)
- ⑤ 산학협력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6시간으로 하며, 해당교원을 초빙한 학과(부서)가 강의할 교과목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 ⑥ 산학협력전임교원은 학과(학부)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학부)가 아닌 부서에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 제19조(신규임용자의 직급)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8.)
 - 1. 임용 전까지 4년제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제25조에 따른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대학 재직 당시와 동일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만,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직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임용 전까지 국·공립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을 전입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 전까지 초급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그 직급 의 바로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만,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직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하여 임용되는 사람으로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23. 5. 12.)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그 밖의 경력이 있으면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절 승진임용

- 제20조(승진임용의 정의) "승진임용"이란 재직 중인 교원을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21조(승진임용) 총장은 교육·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승진임용 대상) ① 직급별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다.
 - 1. 교수 : 부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부교수 : 조교수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신규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교수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7. 12. 29.)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하 "승진소요기간"이라 한다)에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양육·임신 또는 출산의 휴직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 ③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동일직급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전임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조교수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3. 8. 30., 2020. 8. 31.)
- ④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본교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승진 시 1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다.
- 제22조의2(승진소요기간 단축) 승진임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1. 별표 2의 승진임용 심사 기준에서 정한 연구실적 기준보다 총 연구실적이 4배 이상이고 SCI급 연구실적이 3배 이상을 충족한 경우
 - 2.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또는 셀(Cell)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 3.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23조(승진임용 시기)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 제24조(승진임용 절차) ①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일 5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학부(과)장(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 비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일 3개월 전까지 해당 학부(과)장(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 비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 1. 승진임용 심사 신청서 1부
 - 2. 승진임용 심사 실적 1부
 - 3. 연구실적 목록 1부
 - 4. 제25조에 따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실적물 각 1부
 -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 연구실적 발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6. 대학(원) 및 부서 자체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 등 서류 각 1부 (개정 2018. 9. 3.)

- 7. 학부(과) 자체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 등 서류 각 1부
- ② 해당 학부(과)장(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 비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소속 부서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마친후, 승진임용일 4개월 전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출서류(대학원과 부서의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해당 대학장(대학원과 부서의 경우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 ③ 해당 대학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마친 후, 승진임용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대학(원)장과 부서장이 추천한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8. 9. 3.)
-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전임교원이 5명 이상인 대학원의 학부(과), 전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부(과)의 승진임용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제25조(승진임용 심사기준과 승인) ①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직급으로 2회차 이상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재임용 기간을 가산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 심사기준으로 한다. 이 때에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별표2의 승진기준 연구실적 + (승진기준 연구실적 ÷ 승진소요연수 × 재임용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재임용기간'은 최초 재임용계약일로부터 승진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개정 2020. 8. 31.)
 - ② 학부(과)장, 대학원 주임교수가 자체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에는 소속 대학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이 자체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비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있는 소속 부서장이 자체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9. 3.)
 - ⑤ 학부(과)의 자체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승진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9. 3.)
 - ⑥ 대학원, 단과대학, 비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있는 부서의 자체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승진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9. 3.)
 - ⑦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타 대학 근무경력을 본교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하여 승진하고자 할 경우 연구실적물 인정 등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 다. (신설 2018. 9. 3.)

- 제26조(승진임용 심사) ① 대학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9. 3., 개정 2022. 4. 20.)
 - 5. 대학에의 발전기여도에 관한 사항 등
 - ② 승진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3명 이상이 한다.
 -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으로 하고, 3명 중 1명 이상은 타대학교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연구실적물은 "수", "우", "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⑤ 연구실적물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우"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⑥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제5항의 평정점 미만으로 승진이 유보된 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 중 평정점이 모두 "우"이상인 것은 승진소요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차기 승진임용심사 때에 재심사 없이 인정하며, 평정점이 하나라도 "미"이하로 평정된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재사용 할 수 없다.
 - ⑦ 석·박사학위논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SCI-SCIE-SSCI-A&H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SCOPUS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로 평가한다.
- 제27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①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승진 소요기간 중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4년 이내(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 및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6년 이내), 동일직급으로 2회차 이상 재임용된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기준 해당 직급의 총 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로 승진임용 5개월 전까지 본교 소속으로 발표한 다음 각 호의 연구실 적물[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 고유식별번호) 발급을 받은 경우도 인정]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29., 2020. 8. 31.)
 - 1. 국내외 전문 학술저서(참고서, 편저 등은 불인정) (개정 2017. 12. 29.)

- 2.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불인정)
- 3. SCI,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
- 4. SCOPUS에 게재된 논문
-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6.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연구실적
- 7. (삭제 2017. 12. 29.)
- 7의2. (삭제 2017. 12. 29.)
- 8. (삭제 2017. 12. 29.)
- 9. 석사학위 논문(신규임용 시 학사학위만을 취득한 교원에 한하며, 산학협력전임교원은 불인정) (개정 2018. 9. 3.)
- 10. 박사학위 논문(신규임용 시 학사 또는 석사학위만을 취득한 교원에 한하며, 산학협력전임교원은 불인정) (개정 2018. 9. 3.)
- 11. 산학협력 분야의 경우 일반전임교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연구실적, 산학협력전임교 원은 별표 5에서 정한 연구실적(신설 2017. 12. 29., (개정 2018. 9. 3.)
- 12. 별표 2의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 심사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전임교원은 별표 6에 서 정한 연구실적 (신설 2020. 8. 31.)
- ② 전임강사 임용기간 중에 발표한 SCI,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 중 조교수 승진임용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지 아니한 논문은 조교수 재직기간 중에 발표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교수 재직기간에 발표한 연구실적 중 부교수 승진임용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실적을 부교수 재직기간에 발표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10%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8. 31.)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 연구실적 발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실적물로서 승진임용 1개월 전까지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29.)
- ⑤ 일반전임교원의 제1항제11호의 산학협력 실적을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임용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가 제출하여 제26조에 의거 연구실적물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총 연구실적의 최대 25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

- 을 적용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18. 9. 3., 2020. 8. 31.)
- ⑥ 산학협력전임교원의 제1항제11호의 산학협력 이외의 실적을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임용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가 제출하여 제26조에 의거 연구실적물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총 연구실적의 최대 25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별표 5의 "4-교외연구실적"이 최소 승진요구실적 또는 정년보장요구실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승진 또는 정년보장 한다. (신설 2018. 9. 3.)
- 제28조(연구실적물의 인정률)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은 별표 1의2와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 8. 31.)
 - 1. (삭제 2020. 8. 31.)
 - 가. (삭제 2020. 8. 31.)
 - 나. (삭제 2020. 8. 31.)
 - 2. (삭제 2020. 8. 31.)
 - 가. (삭제 2020. 8. 31.)
 - 나. (삭제 2020. 8. 31.)
 - 다. (삭제 2020. 8. 31.)
 - 라. (삭제 2020. 8. 31.)
 - 3. (삭제 2020. 8. 31.)
 - 4. (삭제 2017. 12. 29.)
 - 가. (삭제 2017. 12. 29.)
 - 나. (삭제 2017. 12. 29.)
 - 5. (삭제 2017. 12. 29.)
 - 6. (삭제 2020. 8. 31.)
 - 7. (삭제 2020. 8. 31.)
 - 8. (삭제 2020. 8. 31.)
 - 9. (삭제 2020. 8. 31.)
 - ② 제1항에서 n은 저자수로 본교 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17. 12. 29., 2018. 9. 3., 2020. 8. 31.)
 - ③ (삭제 2017. 12. 29.)
 - 1. (삭제 2017. 12. 29.)

- 2. (삭제 2017. 12. 29.)
- 3. (삭제 2017. 12. 29.)
- 4. (삭제 2017. 12. 29.)
- ④ 제1항에서 "제1저자"라 함은 해당 논문 등에 저자로서 제일 먼저 성명이 기재된 저자를 말한다.
- ⑤ 제1항에서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수정 책임자로서,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임이 명시된 자를 말한다.
- ⑥ 논문 등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교신저자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발급한 서류에 따라 교신저자임을 판정한다.
- 제29조(승진대상자에 대한 연구지원) 승진임용 대상자에게는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사람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 3. 본교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교수 승진의 경우에는 본교 신규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25조에 따른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 사람
- 5.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각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고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에서 승진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
- 6.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자체심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자체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 7. 승진소요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2학점 이상의 학부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 강좌(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대학원 전공교과목 강좌를 포함한다)를 연평균 2강좌 미만으로 강의한 사람. 다만, 연구년(6개월 이상), 파견(6개월 이상),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된 양육·임신 또는 출산의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산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3. 8. 30., 2016. 11.

- 29, 2018. 9. 3., 2020. 8. 31.)
- 8. 대학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9. 승진임용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동안 합산한 강의 시간이 최근 2년 동안의 책임강의 시간에 미달한 사람 (신설 2013. 8. 30.)
- ②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담당 전공과목(교양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영어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승진소요 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강좌를 연평균 2강좌 이상 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개정 2016. 11. 29., 개정 2023. 5. 12.) 제31조(승진임용시의 임용기간)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승진

- 가. 제34조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 동의를 받은 사람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중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 : 3년 이내
- 2. 부교수 승진 : 6년 이내
- 제32조(승진임용 재심사) ① 학부(과)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해당 대학장에게, 대학(원) 및 해당 부서(비학과 소속 전임교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 ② 학부(과)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재심사는 해당 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대학(원) 및 해당부서(비학과 소속 전임교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재심사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8. 9. 3.)
 - ③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심사 결과 승진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진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절 정년보장교원임용

- 제33조(정년보장교원임용의 정의) "정년보장교원임용"이란「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4조(정년보장교원임용) ①총장은 교육·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을 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교원은 반드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③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의 수는 전체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원 정원의 100분의 65 이내의 수로 한다. (개정 2016. 11. 29.)
- 제34조의2(정년보장교원의 의무) ① 정년보장교원은 정년보장 기간 중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2년마다 100퍼센트 이상의 연구실적물(산학협력 실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은 예외로 하고, 산학협력전임교원은 별표 5의 "4-교외연구비"를 50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18, 9, 3.)
 - ② 정년보장교원이 교무위원, 본부 부처장·부단장인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임기 동안 연 50퍼센트의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③ 총장은 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정년보장교원에게 각종 파견, 연구교수 선정 및 교내 재정적 인센티브 수혜 제한, 박사논문 지도 임명 제한, 복무(겸직·공무국외여행) 제한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④ 제34조의2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9.)
- 제35조(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 ①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교수로 승진임용 예정인 사람
 - 2. 제16조에 따라 교수로 신규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
 - 3.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
 - 4. 제39조에 따라 교수로 재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
 - 5. 제21조에 따라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중 제37조제1항 및 제63조제10항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
 -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때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신청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신청한다.
- 제36조(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① 일반전임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 "일반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

라 심사하고, 산학협력전임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는 별지 제2-2호서식 "산학협력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른 업적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있다.(개정 2017.12.29., 2018.09.03.)

- ②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
- ④ 정년보장교원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 ⑥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정년보장교원임용 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의 신청일까지 본교 소속으로 발표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 [DOI(D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 고유식별번호) 발급을 받은 경우도 인정]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29., 2018. 9. 3.)
- ⑦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 연구실적 발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실적물로서 정년보장교원임용 1개월 전까지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신설 2017. 12. 29.)
- 제37조(정년보장교원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보 장교워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80점 미만인 사람 (개정 2017. 12. 29.)
 - 2. 현재 직급의 임용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2학점 이상의 학부 전공교과목 및 교 양교과목 강좌(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대학원 전공교과목 강좌를 포함한다)를 연 평균 2강좌 미만으로 강의한 사람 (개정 2013. 6. 21., 2013. 8. 30., 2016. 11. 29.)
 - 3.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4.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본부의 심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정년보장교원임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본부의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신설 2017. 12. 29.)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담당 전공과목(교양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영어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산학협력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현재 직급의 임용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강좌를 연평균 2 강좌 이상 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년보장교원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개정 2016. 11. 29., 2018. 9. 3., 2023. 5. 12.)

제4절 재임용

- 제38조(재임용의 정의) "재임용"이란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직급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9조(재임용) 총장은 교육·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제40조(재임용 대상) ① 제16조와 제21조에 따라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을 재임용대상자로 한다.
 - ②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제41조(재임용 시기)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 제42조(재임용 절차)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 야 하다.
 - 1. 재임용 심사 신청서 1부
 - 2. 연구실적 목록 1부
 - 3. 해당 연구실적물 각 1부
 -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마친 후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 및 불복처리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재임용 심사) ①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

- 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산학협력전임교원에 한함) (개정 2018. 9. 3.)
- 5. 대학에의 발전기여도에 관한 사항 등
- ② 일반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전임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실시하고, 산학협력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3-2호서식 "산학협력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행정·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부서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행정·경영 겸무형 교원'이라한다)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9. 3.)
- ③ 재임용 심사 평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 ④ 재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
- ⑤ 재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⑥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44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①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해당 직급의 임용기간 중 재임용 심의 신청일까지 발표한 제27조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 고유식별번호) 발급을 받은 경우도 인정]로 한다. 다만, 직급별 2회차 이후의 재임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계약임용기간 중 재임용 심의 신청일까지 발표한 연구실적물로 한다. (개정 2020. 8. 31.)
 - ② 승진임용과 재임용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동일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 연구실적 발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실적물로서 재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신설 2017. 12. 29.)
 - ④ 보직 교원(교무위원, 본부 부처장·부단장)이 재임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임기 동안 연 50퍼센트의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제45조(연구실적물의 인정률)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46조(재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 1. 연구실적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행정·경영 겸무형 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31.)
 - 가. 직급별 1회차 재임용 심사: 제45조에 따라 계산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이 별표 2 의 직급별 총 연구실적 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사람
 - 나. 직급별 2회차 이후 재임용 심사: 제45조에 따라 계산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이 '별표 2의 직급별 총 연구실적 기준 ÷ 승진소요최저기간 × 재임용기간(직전 계약 임용기간)'의 100분의 90 미만인 사람
 -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 (개정 2017. 12. 29.)
 - 3. 현재 직급의 임용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2학점 이상의 학부 전공교과목 및 교 양교과목 강좌(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대학원 전공교과목 강좌를 포함한다)를 연 평균 2강좌 미만으로 강의한 사람 (개정 2013. 6. 21., 2013. 8. 30., 2016. 11. 29.)
 - 4.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본부의 심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재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본부의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신설 2017. 12. 29.)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담당 전공과목(교양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영어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산학협력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현재 직급의 임용기간 중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강좌를 연평균 2강좌 이상 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개정 2016. 11. 29., 2018. 9. 3., 2023. 5. 12.)

제47조(재임용시의 임용기간) ① (삭제 2020. 8. 31.)

- ② 각 직급별 재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수 : 3년 이내
 - 2. 부교수 : 4년 이내. 다만, 200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자는 8년 이내, 2018 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는 5년 이내 (개정 2017. 12. 29.)
 - 3. 조교수 : 3년 이내.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는 4년 이내 (단서 신설 2017. 12. 29.)
- ③ 전임교원이 재임용 기간 중 임신·출산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입양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임신·출산은 1회 당 1년 이내, 입양은 1회 당

1년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48조(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업적평가

- 제49조(업적평가) ①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교육, 연구, 강의, 사회봉사 등에 대한 업적을 평가한다.
 - ② 업적평가의 기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겸직허가

- 제50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본교 재직 중 징계를 받은 교원
 - 2.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교원
 -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제3조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 직전 2개 학기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교원 (개정 2019. 7. 22.)
- 4. 제54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겸직을 한 사실이 확인된 교원 제51조(겸직대상) 교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 2.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에 따른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 4.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8조에 따른 특화선도기 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7.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52조(허가기준) 교원의 겸직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 학생의 교육 ·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제53조(허가범위) ①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특화선도기업,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포함한다)의 겸직대상 기관은 교원 1인당 2개 이하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 1인당 3개 이하의 기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21. 12. 10.)
 - ② 겸직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정관 등 겸직하고자 하는 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10.)
 - ③ 겸직기관의 근무시간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주 8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교가 설치한 기관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겸직 제한기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54조(허가절차) ① 겸직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 다.
 - ②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는 허가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타당성, 교육·연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에게 겸직허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은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타당성이 있고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특화선도기업,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포함한다)의 겸직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허가한다. (개정 2016. 6. 15., 2021. 12. 10.)
 - ⑤ 본교가 설치한 기관의 당연직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본교 부서장으로 보직된 때에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제5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받은 전임교원은 겸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해당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개정 2021. 12. 10.)

-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신설 2018. 9. 3.)
-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신설 2018. 9. 3.)
- ⑦ (삭제 2020. 8. 31.)
- ⑧ 다른 대학의 강사, 겸임교수 등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5., 2020. 2. 28.)

제55조(심의사항)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허가의 필요성
- 2. 허가기간의 적절성
- 3. 허가대상 기관의 적합성
- 4. 허가기준의 적합성
- 제56조(허가의 취소) 총장은 겸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이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7조(이의신청) ① 허가를 신청한 교원이 허가 여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은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대학(원)장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허가여부를 재결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 제58조(책임) ①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이 진다.
 - ② 제5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본인의 불이익, 기업체의 손실 등에 대하여 본교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장 정년트랙 기금교원

제59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정의)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이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부속시설, 지원 시설 소속으로 임용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4. 3. 31., 2018. 9. 3.,

2020. 8. 31.)

- 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이하 '산학연구중점교원'이라 한다)과 산학협력교육중점교원(이하 '산학교육중점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8. 9. 3.)
- ③ 정년트랙 기금교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비전임교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되, 산학연구중점교원은 산학협력단회계(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 재원으로, 산학교육중점교원은 산학협력단회계(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 또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2018. 9. 3.)
- ④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2.)

제60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 (삭제 2021. 7. 2.)

제61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신규임용)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1. (삭제 2021. 7. 2.)
- 2. (삭제 2021. 7. 2.)
- 3. (삭제 2021. 7. 2.)

제62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승진임용)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1. (삭제 2021. 7. 2.)
- 2.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 ⑥ (삭제 2021. 7. 2.)
- ⑦ (삭제 2021. 7. 2.)
- ⑧ (삭제 2021. 7. 2.)
- ⑨ (삭제 2021. 7. 2.)
- ⑩ (삭제 2021. 7. 2.)
- ① (삭제 2021. 7. 2.)
- ①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제63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 ⑥ (삭제 2021. 7. 2.)
- ⑦ (삭제 2021. 7. 2.)
- ⑧ (삭제 2021. 7. 2.)
- ⑨ (삭제 2021. 7. 2.)
- ⑩ (삭제 2021. 7. 2.)
- 1. (삭제 2021. 7. 2.)
- 2. (삭제 2021. 7. 2.)
- 3. (삭제 2021. 7. 2.)
- 4. (삭제 2021. 7. 2.)

제64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재임용)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 ⑥ (삭제 2021. 7. 2.)
- ⑦ (삭제 2021. 7. 2.)
- ⑧ (삭제 2021. 7. 2.)
- ⑨ (삭제 2021. 7. 2.)
- ⑩ (삭제 2021. 7. 2.)
- ① (삭제 2021. 7. 2.)
- 1. (삭제 2021. 7. 2.)
- 2. (삭제 2021. 7. 2.)
- 3. (삭제 2021. 7. 2.)

- ①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제65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처우)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제66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임무) ① (삭제 2021. 7. 2.)

- ② (삭제 2021. 7. 2.)
- ③ (삭제 2021. 7. 2.)
- ④ (삭제 2021. 7. 2.)
- ⑤ (삭제 2021. 7. 2.)
- ⑥ (삭제 2021. 7. 2.)
- ⑦ (삭제 2021. 7. 2.)

제67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복무) (삭제 2021. 7. 2.)

제68조(정년트랙 기금교원의 면직) (삭제 2021. 7. 2.)

- 1. (삭제 2021. 7. 2.)
- 2. (삭제 2021. 7. 2.)
- 3. (삭제 2021. 7. 2.)
- 4. (삭제 2021. 7. 2.)
- 5. (삭제 2021. 7. 2.)
- 6. (삭제 2021. 7. 2.)
- 7. (삭제 2021. 7. 2.)

제5장 비전임교원

제1절 명예교수

- 제69조(명예교수의 자격)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고, 퇴직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

- 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로 추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0조(추천) ① 명예교수로 추대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과) 또는 대학원 교수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해당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신청 한다.
 - ② 각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는 해당 학부(과) 또는 대학원 소속 교수회의에서 전체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의 학부(과)장회의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교수 대상자가 총장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추천한다. (개정 2015. 6. 29., 2020. 2. 28.)
- 제71조(구비서류) 각 대학(원)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각 대학(원)장의 명예교수 추천서 각 1부
 - 3. 교육과 학술상의 업적조서 1부
 - 4. 학부(과) 또는 대학원 교수 의견서 1부.
 -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제72조(추대) 총장은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람에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 제73조(명예교수 추대의 취소) ①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이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의 학부(과)장회의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에게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 ②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명예교수의 추대는 취소된다.
- 제74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와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기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 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22.)
- 1. 퇴직 전 강의평가 또는 연구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 68세 미만인 경우(68세의 경우에는 68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 ③ 명예교수에게는 연구에 대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명예교수는 도서관, 정보전산원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⑤ 명예교수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⑥ 명예교수는 전체교수회의, 학부(과)회의,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제2절 석좌교수

- 제75조(석좌교수의 정의)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 제76조(석좌교수의 자격)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특정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 2.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 3. 그 밖에 석좌교수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람
 - 4. 65세 미만인 사람(단, 65세의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 로 한다.) (신설 2019. 7. 22.)
- 제77조(석좌교수의 신규임용) ① 석좌교수는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
 - ②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이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좌교수 임용추천서 1부
 - 2. 석좌교수 활용계획서 1부
 - 3. 석좌교수 임용신청서 1부
 - 4. 이력서 1부

- 5. 학력증명서 각 1부
- 6. 경력증명서 각 1부
- 7.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각 1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9. 소속 기관장의 동의서 1부
- 10. 임용계약서 1부
- 11. 그 밖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③ 석좌교수의 신규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 제78조(석좌교수의 재임용) ① 석좌교수는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석좌교수의 재임용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석좌교수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 ④ 석좌교수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11호서식 "석좌교수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 ⑤ 재임용 심사평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 ⑥ 재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
 - ⑦ 재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⑧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44조를 준용한다.
 - ⑨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 ⑩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 1. 제4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
 - 2.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① 석좌교수의 재임용은 2회에 한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⑩ 석좌교수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9조(석좌교수의 처우) ① 석좌교수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 ② 석좌교수는 전체교수회의, 학부(과)회의,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 ③ 석좌교수의 급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석좌교수가 기본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강 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외국인 석좌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조(석좌교수의 임무) ① 석좌교수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석좌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22.)
 - ③ 석좌교수는 교과담당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석좌교수는 소속 부서의 교무와 학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⑤ 석좌교수는 초빙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 및 학술활동에서 본교 석좌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 제81조(석좌교수의 복무) 석좌교수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2.)
- 제82조(석좌교수의 면직) 총장은 석좌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 1. 임용기간 중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교육 또는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
 - 4.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6. 임용시 제출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된 경우
 - 7. 기타 면직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절의2 특임교수

- 제82조의2(특임교수의 정의 및 자격) "특임교수"란 국내외 교육, 연구, 산업, 과학기술, 경영 분야 등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며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82조의3(특임교수의 위촉) ① 특임교수는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개정 2020. 2. 28.)

- 제82조의4(특임교수의 처우) ① 특임교수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 ② 특임교수는 전체교수회의, 학부(과)회의,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 ③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특임교수에게 본교의 교육·연구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2조의5(특임교수의 임무) ① 특임교수는 특별강의, 세미나, 학교발전에 대한 자문, 산학협력, 대외활동 등 본교가 지정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특임교수는 재직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에 있어서 본교 특임 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 제82조의6(특임교수의 면직) 특임교수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81조를 준용한다.

제3절 겸임교원

- 제83조(겸임교원의 정의) 겸임교원이라 함은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으로서 겸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22.)
- 제84조(겸임교원의 자격)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22.)
 - 1.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근무 형태의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7. 22.)
 - 4. 65세 미만인 자. (단, 65세의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9. 7. 22.)
- 제85조(겸임교원의 신규임용) ① 겸임교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 절차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임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29., 2019. 7. 22.)

- ② 겸임교원의 신규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2., 2020. 2. 28.)
 -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 (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 게 대체할 겸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 2.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겸임교원의 직급은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신설 2020. 2. 28.)
- 1. 겸임교수 : 8년 이상
- 2. 겸임부교수 : 6년 이상
- 3. 겸임조교수 : 4년 이상
- 제86조(겸임교원의 재임용) ① 겸임교원은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겸임교원의 재임용은 2회에 한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겸임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 제87조(겸임교원의 처우) ① 겸임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 ② 겸임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겸임교원수당의 지급대상은 한 학기당 2학점 이상의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담당하거나 대학원에서 학생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방학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소속 겸임교원에게는 방학기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겸임교원수당은 강사료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⑤ 겸임교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2. 28.)

- ⑥ 겸임교원은 전체교수회의, 학부(과)회의,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 제88조(겸임교원의 임무) ① 겸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겸임교원은 교과담당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겸임교원은 소속 부서의 교무와 학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④ 겸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22.)
- 제89조(겸임교원의 면직) 겸임교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8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초빙교원

- 제90조(초빙교원의 정의) "초빙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 제91조(초빙교원의 구분) 초빙교원은 맡은 업무에 따라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초빙교원,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초빙교원, 교육을 전담하는 초빙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초빙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초빙교원,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초빙교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2. 10., 2022. 4. 20.)
- 제92조(초빙교원의 자격) 초빙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2., 2020. 2. 28.)
 - 1.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을 것
 -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 2. 65세 미만인 자. (단, 65세의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 제93조(초빙교원의 신규임용) ① 초빙교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 절차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임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22.)

- ②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 초빙교원에 한하여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6. 29., 개정 2020. 2. 28.)
-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 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 급하게 대체할 초빙교원이 필요한 경우
- 2.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초빙교원의 직급은 제85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 2. 28.) 제94조(초빙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기 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빙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신규 또는 재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을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 ③ 초빙교원의 재임용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41조를 준용한다.
 - ④ 초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 ⑤ 초빙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초빙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포닥 연구교수의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 평정표"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20. 8. 31.)
 - ⑥ 재임용 심사평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 ⑦ 재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
 - ⑧ 재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⑨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44조를 준용한다.
 - ⑩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 ⑪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 1. 제5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
 - 2.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② 초빙교원의 재임용은 2회에 한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초빙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어학교육을 전담하는 외국 인 초빙교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 ④ 학부(과), 대학(원), 그 밖의 부서에서는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이전에 자체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다.
- ⑤ 학부(과)의 자체 심사기준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원) 및 그 밖의 부서의 자체 심사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5조(초빙교원의 처우) 초빙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제7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17조의 부속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직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31., 학칙개정 2021. 10. 1.)
- 제96조(초빙교원의 임무) ① 초빙교원은 정책사업, 교육, 연구, 산학협력,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 12. 10., 2022. 4. 20.)
 - ② 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7. 22.)
 - ③ 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9. 7. 22., 2020. 2. 28., 2021. 12. 10., 2022. 4. 20.)
 - 1.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초빙교원 : 0시간
 - 2.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초빙교원 : 9시간
 - 3. 교육을 전담하는 초빙교원 : 12시간
 - 4.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초빙교원 : 3시간
 - 5. 연구를 전담하는 초빙교원 : 0시간
 - 6.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초빙교원 : 3시간
 - 7.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초빙교원 : 0시간
 - ④ 초빙교원은 교과담당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 ⑤ 초빙교원은 소속 부서의 교무와 학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⑥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과 학술활동에서 본교 초빙교원임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2. 28.)
 - ⑦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은 학교 홍보 등 활동실적을 학기

말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제97조(초빙교원의 복무) 초빙교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초빙교원의 업무 특성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제98조(초빙교원의 면직) 초빙교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82조를 준용한다.

제5절 객워교원

- 제99조(객원교원의 정의) 객원교원이라 함은 교외학자로서 연구, 강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부기관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 제100조(객원교원의 자격) 객원교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연구년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
 - 2.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본교와 협약 등을 통하여 협동연구 또는 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01조(객원교원의 신규임용) ① 객원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제77조를 준용한다.
 - ② 객원교원의 신규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 제102조(객원교원의 재임용) ① 객원교원은 교육실적,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본교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 ② 객원교원의 재임용은 2회에 한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객원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 제103조(객원교원의 처우) ① 객원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 ② 객원교원은 전체교수회의, 학부(과)회의,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 ③ 객원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 ④ 객원교원에게 본교의 교육·연구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객원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객원교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4조(객원교원의 임무) ① 객원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객원교원은 교과담당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객원교원은 소속 부서의 교무와 학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객원교원은 초빙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과 학술활동에서 본교 객원교원임을 밝혀야 한다.
- 제105조(객원교원의 복무) 객원교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106조(객원교원의 면직) 객원교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82조를 준용한다.

제6절 강사 (신설 2019. 7. 22.)

제107조(강사 자격·임용·복무·처우 등) 본교 학칙 제8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 임용, 복무, 면직 등 강사 임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7. 22., 학칙개정 2021. 10. 1.)

제6장 보직관리 등

- 제108조(보직의 범위) ① 본교 교육공무원의 보직은 「국립학교 설치령」 및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학칙」에 따라 설치된 부총장, 처장, 실장, 대학(원)장, 학부(과)장, 부속시 설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이외의 보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9조(보직의 자격) 부총장은 교수로 임명하고, 처장, 실장,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하고, 학부(과)장,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명한다. 다만,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0. 8. 31.)
- 제110조(보직의 임기) ① 보직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부서장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111조(직무대리) ① 부서장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처장이 부서장을 직무대리하며, 부처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타 부서장이 직무대리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부서장 중에

서 적합한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 학과(부)장, 대학(원)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이 해당 학과(또는 전공)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112조(지침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79호, 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 제3조(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제7호,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제46조제3호 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임용한 정년트랙기금교원부터 적용한다.
 - ③ 제85조 및 제86조는 2013년 9월 1일 이후 임용하는 겸임교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① 2013년 3월 1일 전에 임용한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제7호,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제46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② 2012년 10월 1일 전에 임용한 기금교원의 경우에는 제62조부터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198호, 2013. 6.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호, 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제9호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64조제13항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재임용되는 기금교원부터 적용한다.
- ③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제30조제1항제 7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24호, 2014. 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0호, 2014.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10월 1일 전에 임용한 비정년트랙 기금교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61호, 2014.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6호, 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은 2014년 4월 1일부터 임용한 정년트랙 기금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전에 임용한 어학교육을 전담하는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물의 인정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4호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호 및 제4호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제54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2항 및 제13항, 별표 1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임용하는 초빙교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2016년 9월 1일 전에 임용하는 어학교육전담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35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제6항은 2017년 1월 1일자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등 영어강좌 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7호,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제37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자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임교원 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 ②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승진임용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관한 제27조제1항제7호·제7의2호·제8호제11호, 제27조제5항, 제 제28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제9호, 제28조제2항·제3항, 별표 3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 연구실 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관한 제27조제1항제7호·제7의2호·제8호제11호, 제27조제 5항, 제28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제9호, 제28조제2항·제3항, 별표 3·4의 개정규정의 준용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된 정년보장교 원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③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의 제한에 관한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된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임교원 재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재임용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관한 제27조제1항제7호·제7의2호·제8호·제11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제9호, 제28조제2항·제3항, 별표 3·4의 개정규정의 준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 ② 재임용의 제한 및 재임용시의 임용기간에 관한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제47조제 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다.
- 제5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재임용·승진임용·정

년보장교원임용 신청을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제449호, 2018. 09. 0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공무원 산학협력전임교원에 대한 적용례) 2018년 9월 1일 이후 임용한 산학 협력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년트랙기금교원에 대한 적용례)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 임용한 정년트랙기금교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재임용·승진임용· 정년보장교원임용 신청을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승진임용 심사 기준 별표 2의 5호는 2018. 9. 1. 이후 신규 임용한 전임교원부터 적용하되, 주1, 주2의 각주 내용은 본교 임용 후 첫 번째 승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제481호, 2019. 7. 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강사, 겸임교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7조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 8. 1. 이후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하며, 2019. 8. 31.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2019. 8. 31.자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개정규정 시행 전 임용된 겸임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개정규정 시행 전 임용된 초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2 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9. 9. 1.자 재임용을 위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임용을 하되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호, 제54조제7항은 2019. 9. 1.부터 적용한다.
- 제4조(명예교수 처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은 2019. 8. 31. 이후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17호, 2020.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1호, 202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7호. 2020.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은 제 27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은 제28조제1항·제2항, 별표 3, 별표 4의 개정과 별표 1의2, 별표5, 별표 6의 신설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622호, 2021.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5호, 2021.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0호, 2022. 4.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04호, 202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6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원 연구실적물 인정률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연구실적물 저널 인용 순위의 명칭 변경 및 적용 기준은 2023.10.1. 이후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연구 및 교육경력환산율

71 로테 NI O	환산율	본교환산율
경 력 내 용	(%)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100%	100%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100%	100%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한 경력		
나.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다. 다음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4)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라.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		
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마.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		
년을 초과하지 못함)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		
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		
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30-100%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60
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교육경력		FO
가) 주 5시간 이하 30%, 주 5시간 초과 시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초과 못함		50
나) 어학교육전담 외국인 초빙교원이 상근직이며, 주 9시간 이상인 경우		100
100% 인정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과목과 부합		60
되는 경우 4) 3년제 기술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		60
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0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0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따라 조교로 근무한 경력		6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60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석사 및		70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석사과		70
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78 탁 테 8	(%)	인정률(%)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70-100%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해당 전 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8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 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80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70
6)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 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 력 및 『항공법』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0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 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 될 수 있는 경우		7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로 근무 한 경력		7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70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 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4)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		70

[별표 1의2] (신설 2020. 8. 31., 개정 2021. 12. 10., 2023. 5. 12.)

전임교원 연구실적물 인정률 및 평가방법

(2020. 9. 1.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1. 총 연구실적 산정(양적 인정률, %)

가. 저서

1) 국내 학술저서: 1/n×100% 2) 국제 학술저서: 1/n×120%

나. 논문

1) 저자 수

(가) 해외논문(SCIE, SSCI, A&HCI, SCOPUS 등)

저자 수(명)	주저자(%)	공동저자(%)	저자 수(명)	주저자(%)	공동저자(%)
1	100	_	5	40	20
2	80	50	6~10	30	15
3	70	40	11이 이사	20	10
4	50	30	11인 이상	20	10

- ※ JIF 상위 25% 이내 주저자의 논문은 저자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자수를 5명으로 한다.
- ※ 생산공학, 정보통신, 화공화학, 건축건설, 물리수학스포츠 계열에서는 공 동저자 논문이 JIF 상위 50%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연구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국내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n+1)×100%
 - 공동저자: 1/(n+1)×100%
- (다) 우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분야): 해외논문의 기준 적용

2) 가중치

-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은 미국 클래리베이트(舊 톰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계열별 영향지수 순위(JIF)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JIF는 해당 논문이 게 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연도 포함 이전 3년의 JIF 중 가장 상위 값을 적용한다. ^{주1)}

<JIF 구간별 가중치>

구분 IIF 구간		대	상	비고
ੀ ਦ	JIF 기신	A·B그룹	C·D그룹	H1-12-
	JIF 상위 5% 이내	6배	6배	JIF가 부여되지
SCIE	JIF 상위 10% 이내	4배	4배	않는 SSCI, A&HCI
SSCI	JIF 상위 15% 이내	2배	3배	저널은 SJR 가중
	JIF 상위 25% 이내	1배	3 H	치 부여
A&HCI	JIF 상위 50% 이내	0.8배	2배	
	JIF 상위 75% 이내	0.6배	1.6배	· Q1:3배

7.11	구분 IIF 구간		상	비고
丁七	JIF 구간	A·B그룹	C·D그룹	H 12
	JIF 상위 100% 이 내	0.4배	1.2배	· Q2 : 2배 · Q3 : 1.5배
SCOPUS	SCOPUS	0.3배	1배	· Q4:1배
KCI	KCI	0.2배	0.8배	Q

- ※ 우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분야)는 SCIE, SSCI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별 인정IF와 논문 형태별 인정IF 적용기준'에 따라 'IF'를 산출하고, 산출된 IF를 발표 논문의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JIF category에 적용하여 JIF 구간을 정한다.
 - * 인정IF 적용기준: Regular 논문의 경우 인정IF를 그대로 부여(워크숍, 포스터는 IF 미부여), Short 논문은 IF 1점 차감, Spotlight 논문은 IF 2점 차감
- 주1) (예시) 2020년 게재된 논문의 JIF: 2021년 확정된 '2020년 JIF', 2020년에 확정된 '2019년 JIF', 2019년에 확정된 '2018년 JIF'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하며, JIF값은 해당 분야의 JIF 순위를 말한다.
- 다. 창작작품: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및 창작분야의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 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실적의 경우 일반전임교원은 별표 3에 따른다.
- 마. 석사학위 논문: 100%(산학협력전임교원은 불인정)
- 바. 박사학위 논문: 200%(산학협력전임교원은 불인정)
- 사. 전문 학술번역서: 1/n×100%
- 아. 산학협력 분야의 연구실적의 경우 일반전임교원은 [별표 4]에 따르고, 산학협력전임교원은 [별표 5]에 따른다.
- 자. 해외교류 분야 등의 연구실적의 경우 별표 2의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 심사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전임교원은 [별표 6]에 따른다.

2. 연구실적 질적기준 산정(편수 인정율, 편)

가. 논문

- 1) 저자 수
 - (가) 해외논문(SCIE, SSCI, A&HCI, SCOPUS 등)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제1저자 수가 n일 경우 1편. 단, 교신저자 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편으로 인정
 - (나) 국내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제1저자 수가 n일 경우 1편. 단, 교신저자 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편으로 인정
 - (다) 우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분야)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제1저자 수가 n일 경우 1편. 단, 교신저자 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편으로 인정 해외논문의 기준 적용
- 2) 가중치

-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은 미국 클래리베이트(舊 톰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계열별 영향지수 순위(JIF)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JIF는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연도 포함 이전 3년의 JIF 중 가장 상위 값을 적용한다. ^{주2)}

구분	JIF 구간	가중치	비고
	JIF 상위 5% 이내	4배	JIF가 부여되지 않는
	测 상위 10% 이내	3배	SSCI, A&HO 저널은 SJR 가중치 부여
SCIE, SSCI	测F 상위 25% 이내	1.5배	· Q1 : 3배 · Q2 : 2배 · Q3 : 1.5배 · Q4 : 1배

- ※ 우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분야)는 SCIE, SSCI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별 인정IF와 논문 형태별 인정IF 적용기준'에 따라 'IF'를 산출하고, 산출된 IF를 발표 논문의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JIF category에 적용하여 JIF 구간을 정한다.
 - * 인정IF 적용기준 : Regular 논문의 경우 인정IF를 그대로 부여(워크숍, 포스터는 IF 미부여), Short 논문은 IF 1점 차감, Spotlight 논문은 IF 2점 차감
- 그룹 C와 D에서는 SCIE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을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2편으로 인정한다.

주2) (예시) 2020년 게재된 논문의 JIF: 2021년 확정된 '2020년 JIF', 2020년에 확정된 '2019년 JIF', 2019년에 확정된 '2018년 JIF'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하며. JIF값은 해당 분야의 JIF 순위를 말한다.

※ 참 고

-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연구실적물 평가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A그룹: 생산공학, 정보통신, 화공화학, 소프트웨어
- · B그룹: 건축건설, 물리수학스포츠
- · C그룹: 인문사회창작(문예창작학과 제외), 경영행정
- · D그룹: 설계디자인, 조형예술, 인문사회창작(문예창작학과)
- n은 저자수로 본교 학생을 포함한다.
- "제1저자"라 함은 해당 논문 등에 저자로서 제일 먼저 성명이 기재된 저자 또는 제1저자라고 명시된 저자를 말한다.
-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수정 책임자로서,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임이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 논문 등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교신저자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발급한 서류에 따라 교신저자임을 판정한다.

- 연구질적기준 중 필수요건에 대한 계열별 가중치 기준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 2020. 8. 31.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 제28조제1항 및 부칙을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7.12.29. 2023. 5. 12.)

승진임용 심사 기준

1. 2009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자

□ 2009년 4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구분	총 연구실적	SCI급 연구실적
부교수 승진	 280% 이상. 다만, 신규임용시 박 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 육·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에는 480% 이상 	0 70% olsk
교수 승진	ㅇ 350% 이상	○ 100% 이상

- ※ SCI급 연구실적 :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국제특허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함.
- ※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 분야'는 SCI급 연구실적의 2배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

□ 2009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

구분	총 연구실적	SCI급 연구실적
부교수 승진	 400% 이상. 다만, 신규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 이상 	○ 70% 이사
교수 승진	ㅇ 500% 이상	ㅇ 100% 이상

- ※ SCI급 연구실적 :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국제특허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함.
- ※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 분야'는 SCI급 연구실적의 2배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

2.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신규임용자

□ 2018년 4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구분	총 연구실적	SCI급 연구실적
부교수 승진	 400% 이상. 다만, 신 규임용시 박사학위 취 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00% 이상 	 정보통신계열 150% 이상. 다만 컴퓨터공학계열은 100% 이상 건축건설계열: 100% 이상
교수 승진	ㅇ 500% 이상	150% 이상 - 식품공학, 안경광학 : 125% 이상 - 환경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스포츠, 수학 : 100% 이상 ○ 설계디자인계열 : 100% 이상 ○ 조형계열 : 100% 이상 ○ 인문사회창작계열 : 100% 이상 ○ 경영행정계열 : 100% 이상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SCI급 연구실적 :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국제특허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함.
- ※ SCI급 연구실적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 야 함.
- ※ 인문사회, 예체능,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는 SCI급 연구실적의 3 배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

구분	총 연구실적	연구실적 경	질적 기준
1 L	중 현무결식	계열 구분	질적 기준
교수 승진	ㅇ 700% 이상	 ○ 생산공학계열 ○ 정보통신계열 ○ 건축건설계열 ○ 화공화학계열 ○ 물리수학스포츠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4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IF를 기준으로 JIF 상위 10% 이내는 2편, JIF 상위 10~30% 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설계디자인계열○ 조형예술계열○ 인문사회창작계열○ 경영행정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 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로서 발표한 논문이 8편 이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 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 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하며, "SCI급 연구실적"은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 ※ 교신저자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로 한다.
- ※ 별표 3에 따라 계산된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의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다음의 인정편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정률	인정편수	인정률	인정편수
250%	2편	50%	0.5편
200%	2편	40%	0.4편
150%	1.5편	25%	0.25편
100%	1편	10%	0.1편
70%	0.7편		

※ "연구실적 질적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교원의 임용 당시의 전공과 승진소요기간 동안 제출한 연구실적 유형, 논문을 제출한 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서, 연구실적 질적 기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3.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규임용자

□ 2018년 4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구분	총 연구실적	SCI급 연구실적
부교수 승진	 400% 이상. 다만, 신 규임용시 박사학위 취 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00% 이상 	 ○ 정보통신계열 195% 이상. 다만 컴퓨터공학계열은 130% 이상 ○ 건축건설계열 : 130% 이상 ○ 기초공학 및 과학계열
교수 승진	ㅇ 500% 이상	- 식품공학, 안경광학 : 162% 이상 - 환경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스포츠, 수학 : 130% 이상 ○ 설계디자인계열 : 130% 이상 ○ 조형계열 : 130% 이상 ○ 인문사회창작계열 : 130% 이상 ○ 경영행정계열 : 130% 이상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SCI급 연구실적 :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국제특허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함.
- ※ 승진소요기간 중 SCI급 연구실적에는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 교수 승진의 경우에는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교신저자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로 함.
- ※ 인문사회, 예체능,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는 SCI급 연구실적의 3 배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

그ㅂ	초 여그시저	연구실적 질적 기준	
ੀ ਦ	구분 총 연구실적	계열 구분	질적 기준
교수 승진	ㅇ 700% 이상	○ 생산공학계열 ○ 정보통신계열 ○ 건축건설계열 ○ 화공화학계열 ○ 물리수학스포츠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5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IF를 기준으로 JIF 상위 10%이내는 2편, JIF 상위 10~30%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설계디자인계열 조형예술계열 인문사회창작계열 경영행정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 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 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9편 이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 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 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하며, "SCI급 연구실적"은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 ※ 교신저자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로 한다.
- ※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의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다음의 인정편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정률	인정편수	인정률	인정편수
250%	2편	50%	0.5편
200%	2편	40%	0.4편
150%	1.5편	25%	0.25편
100%	1편	10%	0.1편
70%	0.7편		

※ "연구실적 질적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교원의 임용 당시의 전공과 승진소요기간 동안 제출한 연구실적 유형, 논문을 제출한 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서, 연구실적 질적 기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4.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그 ㅂ	초 여그시점	연구실적 경	질적 기준
구분	총 연구실적	계열 구분	질적 기준
부교수 승진	 600% 이상. 다만,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 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 	· · · · · · · · · · · · · · · · · · ·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4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IF 를 기준으로 JIF 상위 10% 이내는 2편, JIF 상위 10~30% 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경력이 3년 미만 인 경우에는 900%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 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서 발표한 논문이 8편 이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 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교수 승진	ㅇ 800% 이상	 ○ 생산공학계열 ○ 정보통신계열 ○ 건축건설계열 ○ 화공화학계열 ○ 물리수학스포츠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6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FF 를 기준으로 JFF 상위 10% 이내는 2편 JFF 상위 10~30% 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
		○ 설계디자인계열 ○ 조형예술계열 ○ 인문사회창작계열 ○ 경영행정계열	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서 발표한 논문이 10편 이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 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 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하며, "SCI급 연구실적"은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 ※ 교신저자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로 한다.
- ※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의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다음의 인정편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정률	인정편수	인정률	인정편수
250%	2편	50%	0.5편
200%	2편	40%	0.4편
150%	1.5편	25%	0.25편
100%	1편	10%	0.1편
70%	0.7편		

※ "연구실적 질적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교원의 임용 당시의 전공과 승진소요기간 동안 제출한 연구실적 유형, 논문을 제출한 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서, 연구실적 질적 기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 2018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신설 2018. 9. 3.)

그ㅂ	초 여그시기	연구실적 질적 기준		
구분 	총 연구실적	계열 구분	질적 기준	
	하면 중 버로 4개 씨크 ㅋ	생산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건축건설계열화공화학계열물리수학스포츠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4편 이상(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6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IF를기준으로 JIF 상위 10~30%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부교수 승진	된 신규임용자의 경우, 4년 제 타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동일직급으로 근무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실적을 감면해 준다. 연구실적 질적기준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함. ^{주1)}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8편 이상 (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2편 이 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600% 이상	○ 산학협력전임교원 (모든 계열)	별표 5의 "4. 교외연구비" 실적이 승진요구실적의 50% 이상	
	 800% 이상 제22조 제3항에 의거 본교 에서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된 신규임용자의 경우, 4년제 타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 교원으로서 동일직급으로 근 	생산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건축건설계열화공화학계열물리수학스포츠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6편 이상 -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JIF를 기준으로 JIF 상위 10% 이내는 2편, JIF 상위 10~30% 이내는 1.5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교수 승진 무한 는 실 최대 연구실	무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실적을 감면해 준다. 단 최대 감면기간은 2년이다. 연구실적 질적기준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함. ^{주2)}	○ 설계디자인계열 ○ 조형예술계열 ○ 인문사회창작계열 ○ 경영행정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10편 이상 - SCI급 연구실적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ㅇ 800% 이상	산학협력전임교원 (모든 계열)	별표 5의 "4. 교외연구비" 실적이 승진요구실적의 50% 이상	

- ※ SCI급 연구실적 계열구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
- ※ "총 연구실적"에는 "SCI급 연구실적"을 포함하며, "SCI급 연구실적"은 SCI,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 ※ 교신저자수가 n일 경우 논문편수는 1/n로 한다.
- ※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의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다음의 인정편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정률	인정편수	인정률	인정편수
250%	2편	50%	0.5편
200%	2편	40%	0.4편
150%	1.5편	25%	0.25편
100%	1편	10%	0.1편
70%	0.7편		

※ "연구실적 질적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교원의 임용 당시의 전공과 승진소요기간 동안 제출한 연구실적 유형, 논문을 제출한 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서, 연구실적 질적 기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주1)

- (예 1: 교육.연구 경력이 3년 이상) 본교에 조교수 4년차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본교 임용 1년 후에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경우,
 - 타대학 근무 인정 기간 = 4-1 = 3년
 - 전적 대학에서 3년 근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600*3/4=450% 이고
 - 감면 승진 요구 실적은 450%의 50%인 225% 이다.
 - 본교에서의 실적 375(=600-225)%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SCI급 연구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감면은 0.5*(4*3/4)=1.5편이다. 그래서 본교에서의 SCI급 실적 2.5편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예 2: 교육.연구 경력이 3년 이상) 본교에 조교수 4년차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본교 임용 2년 후에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경우,
 - 타대학 근무 인정 기간 = 4-2 = 2년
 - 전적 대학에서 2년 근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600*2/4=300% 이고
 - 감면 승진 요구 실적은 300%의 50%인 150% 이다.
 - 본교에서의 실적 450(=600-150)%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SCI급 연구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감면은 0.5*(4*2/4)=1.0편이다. 그래서

본교에서의 SCI급 실적 3.0편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예 3: 교육.연구 경력이 3년 미만) 본교에 조교수 3년차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본교 임용 4년 후 부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전적 대학에서 2년 근무에 해당하는 연구실직은 900*2/6=300% 이고
 - 감면 승진 요구 실적은 300%의 50%인 150% 이다.
 - 본교에서의 실적 750(=900-150)%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SCI급 연구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감면은 0.5*(6*2/6)=1.0편이다. 그래서 본교에서의 SCI급 실적 5편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주2)

- (예 1) 본교에 부교수 2년차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본교 임용 4년 후 정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전적 대학에서 1년 근무에 해당하는 연구실직은 800*1/5=160% 이고
 - 감면 승진 요구 실적은 160%의 50%인 80% 이다.
 - 본교에서의 실적 720(=800-80)%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SCI급 연구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감면은 0.5*(6*1/5)=0.6편이다. 그래서 본교에서의 SCI급 실적 5.2편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예 2) 본교에 부교수 4년차로 임용된 신규임용자가 본교 임용 3년 후 정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전적 대학에서 3년 근무하였지만, 최대 인정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인정 기간 은 2년이고 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800*2/5=320% 이고
 - 감면 승진 요구 실적은 320%의 50%인 160% 이다.
 - 본교에서의 실적 640(=800-160)%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SCI급 연구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감면은 0.5*(6*2/5)=1.2편이다. 그래서 본교에서의 SCI급 실적 4.8편 이상인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타대학 근무 인정기간은 년 단위로 하고, 1년 미만은 절사한다. 예를 들어, 전 적 대학 근무 기간이 0.6년은 0년으로, 2.8년은 2년으로 계산한다.
 - ※ 연구실적 질적기준도 동일한 계산식으로 한다.
 - ※ 타대학 근무인정기간 = 4년(6년*, 7년**) 승진예정일 기준 본교 근무연수

* 6년 : 교육연구경력 3년 미만

** 7년 : 교육연구경력 3년 미만이고 박사학위 미소지자

6. 2020년 9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 (신설 2020. 8. 31.)

구분	계열 구분	총 연구실적	연구실적 질적 기준
	그룹 A ○ 생산공학 ○ 정보통신 ○ 화공화학 ○ 소프트웨어 그룹 B ○ 건축건설 ○ 물리수학스포츠	○ 440% 이상 다만, 신규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660%이상	, , , , , , , , , , , , , , , , , , ,
부교수 승진	그룹 C	○ 760% 이상 다만, 신규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140%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 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 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9.2편 이상 (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3.8편 이상) ※ 필수요건@와 ⓑ를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요건@: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에 주저자 4편 이상(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6편 이상) • 요건ⓑ: JIF 또는 SJR 50%이내 주저자 2편이상
	그룹 D 설계디자인 조형예술 인문사회창작②**	 680% 이상 다만, 신규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020%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8.0편 이상(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2편 이상) ※ 필수요건@와 ⑤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요건@: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3편 이상(단, 교육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4.4편 이상) · 요건⑥: 창작실적***(개인전, 단행본, 수상설계작품 등)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1편 중 택1

구분	계열 구분	총 연구실적	연구실적 질적 기준
	그룹 A 생산공학 정보통신 화공화학 소프트웨어 그룹 B 건축건설 물리수학스포츠	○ 700% 이상	 ○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8.5편 이상 ※ 필수 요건 : JIF 25%이내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 2편 이상 ○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7면 이상 ※ 필수 요건 : JIF 25%이내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 2편 이상
교수 승진	그룹 C	○ 1,050%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13.5편 이상 ※ 필수요건@와 ⑤를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요건@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에 주저자 6편 이상 · 요건⑥ : JIF 50%, SJR 50%이내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 3편 이상
	그룹 D 설계디자인 조형예술 인문사회창작②**	○ 950%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 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 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12면 이상 ※ 필수요건@와 ⑤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함. · 요건@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3.6면 이상 · 요건⑥ : 창작실적***(개인전, 단행본, 수상설계작품 등) 혹은 한국연구 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 1면 중 택 1

- * "우수학술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지정한 우수 등재학술지를 의미하고, "상위학술지"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문 중분류 내 등재학술지 중 영향력지수(2년IF)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영향력지수는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논문 게재년도의 영향력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 ** 『인문사회창작②』는 문예창작과 교양대학의 글쓰기, 한국사 등 임용 시 총장이 인정하는 전공을 의미하고, 『인문사회창작①』은 인문사회창작②를 제외한 전공을 의미한다.
- *** 그룹 D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창작실적(개인전, 단행본, 수상설계작품 등)은 「교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규정」[별표 3]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표(2 연구업적평가표)에서 상위 150점 이상의 배점 항목 을 말한다.

- ※ "총 연구실적"과 "연구 질적 기준"에는 "SCIE급 연구실적"을 포함하며, "SCIE급 연구실적"은 SCIE, A&HCI, S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우수학술대 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분야)을 말한다.
- ※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 야의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다음의 인정편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정률	인정편수	인정률	인정편수
250%	2.5편	50%	0.5편
200%	2편	40%	0.4편
150%	1.5편	25%	0.25편
100%	1편	10%	 0.1편
70%	0.7편	10%	U.1헌

- ※ "연구실적 질적 기준"의 평가계열 구분 적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제5조의 평가단위(계열)를 따른다. 다만, 승진소요기간 중 연구 실적물 인정범위(기간)에 평가단위(계열)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종 평가단위(계열)의 승진임용 십사기준을 적용한다.
- ※ 연구 질적 기준'은 '총 연구실적'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말하고, '필수 요건'은 연구질적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중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 ※ 연구질적기준 중 필수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JIF, SJR 상위25%, 50%이내의 논문은 주저자수를 상관하지 않는다.(그룹A, B, C 적용)
 - · JIF, SJR 상위 25%이내의 논문1편은 JIF 상위 50%이내의 논문 2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그룹A, B, C 적용)
 - · JIF, SJR 상위 50%이내의 논문1편은 50~100%이내의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그 룹C 적용)
 - · JIF, SJR 50%이내의 SCIE급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룹 C, D적용. 다만, 경영학과는 제외)
 -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또는 상위학술지 논문 2편은 JIF, SJR 50%이내의 SCIE급 논문 1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룹 C, D적용)

7. 2020년 9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외국인 전임교원 (신설 2020. 8. 31.)

구분	계열 구분	총 연구실적	연구실적 질적 기준
	그룹 A, B 생산공학 정보통신 화공화학 소프트웨어 건축건설 물리수학스포츠	○ 220% 이상 다만, 신규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30% 이상	O SCIE급 이상의 약물시에 구서사(세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노무이 2대 이사
부교수 숭진	그룹 C, D 설계디자인 조형예술 인문사회창작	○ 380% 이상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 경영행정	다만, 신규 임용시 박사학위 취득 후 별표 1에 따른 교육· 연구경력이 3년 미만인	논문이 4편 이상 ○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 국제교류처	경우에는 570% 이상	논문이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 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 한 논문이 2편 이상
	그룹 A, B 생산공학 정보통신 화공화학 소프트웨어 건축건설 물리수학스포츠	○ 350% 이상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3편 이상
교수 승진	그룹 C, D o 설계디자인 o 조형예술 o 인문사회창작 o 경영행정	· 475% 이상	○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2.5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 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5편 이상
	기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1.5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 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3편 이상

- ※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은 채용 단계에서 '외국인 으로 한정된 초빙분야'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최초 임용단계에서 총장이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의 적용을 결정한 교원을 말한다. 아울러, 『외국 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교원이 임용 이후 『외 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으로 평가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
- ※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교원은 우리대학의 외국어 교육, 해외 진출, (유)학생 지도·진학·취업상담, 외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제 학술대회 유치, 해외 인턴십 발굴 등 국제화 활성화를 담당한다.

[별표 3] (개정 2016. 11. 29., 2017. 12. 29., 2020. 8. 31.)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

가.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창작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인정률
1. 조형계열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가. 공인된 국내외 개인전	100%
나. 공인된 국내 2인전시회	50%
다. 공인된 국내 단체전시회	25%
라. 공인된 국제공모전 특선이상	100%
마. 공인된 국제공모전 입선이상	50%
바. 공인된 국내공모전 특선이상	25%
사. 공인된 대형전시기획	100%
아. 공인된 중요전시기획	70%
자. 공인된 기타전시기획	50%
2.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가. 설계 작품으로 공인된 국제적 권위의 업적으로 평가된 작품	250%
나. 설계 작품으로 국내의 공공단체, 문화단체 및 사단법인으로부터 심사과정을 마친 후 수상한 작품	150%
다. 공인된 국제설계경기 당선작품	200%
라. 공인된 국제설계경기 입상작품	150%
마. 공인된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당선작품	150%
바. 공인된 국내설계경기 및 공모전 입상작품	100%
사.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 전시회	100%
아.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내 전시회	70%
자. 건축설계 작품으로 국제 저널에 게재된 작품	200%
차. 건축설계 작품으로 국내 저널에 게재된 작품	100%
3. 창작분야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학작품집	
	100%
(1) 시, 소설 및 희곡집	
(2) 산문집 단,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학작품의 경우,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록작품 전체가 신작품이거나, 또는 1/2이상이 국내외 전문잡지에 게재한 작품과 1/3이 상의 신작품이 수록된 것이어야 함.	50%
나. 문학전문지에 게재된 문학작품	
(1) 소설(1,200매 이상)	100%
(2) 소설(1,200매 미만)	70%
(3) 시(편당)	15%
(4) 동화(편당)	40%
(5) 동시(편당)	10%
(6) 꽁트(편당)	10%
(7) 수필(편당)	10%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8) 평론(편당)	10%
(9) 희곡(시나리오 및 방송극 포함) 장막	100%
(10) 희곡(시나리오 및 방송극 포함) 단막	70%
다. 그 밖의 문학전문지(지역단위의 전문지 및 동인지 등)에 게재된 문학작품은 제2 호 각목의 평가기준의 1/2로 평가한다.	

비고

- 1. '공인된 대형전시기획', '공인된 중요전시기획', '공인된 기타전시기획' 구분은 해당 대학 (원) 승진심사위원회 연구실적물 심사결과를 활용함
- 2. 전시기획 연구실적물은 기획자의 성명이 수록된 도록 및 주관기관 확인서를 제출한 해당 분야 전공자(미술이론, 디자인이론, 전시기획)에 한하여 인정함
- 3. 건축 분야 국제전문학술지 : 일본건축학회논문집, 일본건축사학회논문집, 대만건축학회지, 싱가포르건축학회지, 중국건축학회보, 홍콩건축학회지, 필리핀건축학회지

나. 소프트웨어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1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가. 소프트웨어분야 우수학술대회에 발표된 학술논문	100%	

비고

- 1. 우수학술대회 :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한국 연구재단)에서 우수학술대회로 지정된 학술대회를 의미한다. 이 때 학술논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최신의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 2. 우수학술대회에 발표된 학술논문 실적은 승진심사를 위해 제출한 SCIE급 논문 연구실적의 30%까지만 인정한다.

[별표 4] (신설 2017. 12. 29., 개정 2018. 9. 3., 개정 2020. 8. 31.)

일반전임교원의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인정률	비고
1. 특허		
가. 해외특허 등록	1건당 100%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나. 국내특허 등록	1건당 10%	- 국제특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캐나다에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공동 특허등록 : 1/n(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인원)
다. 실용신안등록	1건당 5%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라. 의장등록	1건당 3%	- 공동 등록 : 1/n(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 자 수) - 상표등록은 제외 - 산학협력단에 등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2. 기술이전	10만원당 0.75%	- 산학협력단에 등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하며, 다른 기관에서 체결한 기술이전 실적 은 불인정 - 출원등록, 유지관리비 및 부가세를 제외 한 산학협력단 입금액 기준
3. 산학교육		
가.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 1명당 0.2%	- 최대 8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 - 기업체협약서,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나. 계약학과 운영 책임(채용조건형)	학기당 15%	- 최대 90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 - 개설책임자는 당해년도만 인정
다. 계약학과 운영 책임(재교육형)	학기당 7.5%	- 최대 45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 - 개설책임자는 당해년도만 인정
라.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기관(기업)-학생 1명 매칭 시 1%	- 최대 50명에 한정하여 인정
마. 산학협력 기술지도 및 자문	1건당 2.5%	- 최대 20건까지 인정 - 기업체협약서,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4. 교외 연구비		
가.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 기관) 협력 연구실적	비고의 인정률 계산식에 따름	- 인정률 계산식 · 책임연구원 : 2/(n+1)×m% · 공동연구원 : 1/(n+1)×m% · n은 총 연구원 수(연구보조원 제외)
나. 산업체 협력 연구실적	비고의 인정률 계산식에 따름	· m은 계약금액 : 3억 이상(100), 3억 미만 1억 이상(80), 1억 미만 5천만원 이싱(60), 5천만원 미만(40)
다.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 기관) 수주 실적	1천만원당 1.5%	- 1억원 이상부터 인정 <mark>-3개 학과 이상 또는</mark> 20명 이상의 교수기
라. 산업체 공동연구 수주 실적	1천만원당 3%	- 5천만원 이상부터 인정 수주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5. 교원창업 실적	1건당 100%	- 본인 창업 시 교무처에서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예비벤처기업은 제외 - 공동 사업자등록 : 1/n(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인원)

[별표 5] (신설 2018. 9. 3., 개정 2020. 8. 31., 2023. 5. 12.)

산학협력전임교원의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인정률	비고
1. 특허		
가. 해외특허 등록	1건당 200%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 국제특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 국내특허 등록	1건당 50%	캐나다에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공동 특허등록 : 1/n(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인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다. 실용신안등록	1건당 15%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 공동 등록 : 1/n(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
라. 의장등록	1건당 8%	- 상표등록은 제외 - 산학협력단에 등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2. 기술이전	10만원당 0.25%	- 산학협력단에 능재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다른 기관에서 체결한 기술이전 실적은 불인정 - 출원등록, 유지관리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산 학협력단 입금액 기준
3. 산학교육		
가.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 1명당 0.2%	- 최대 8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 - 기업체협약서,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나. 계약학과 운영 책임(채용조건형)	학기당 15%	- 최대 90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 - 개설책임자는 당해년도만 인정
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기관(기업)-학생 1명 매칭 시 1% 기관(기업) 발굴 1건당 1%	부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음
라. 산학협력 기술지도 및 자문	1건당 2.5%	- 최대 20건까지 인정 - 기업체협약서,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마. 기업(기관) 취업 지도	기관(기업)-학생 1명 취업 시 1%	- 최대 50명에 한정하여 인정. 다만, 취업 담당 부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음
4. 교외 연구비		
가.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 기관) 연구 실적	1천만원당 3. 7 5%	- 인정률 계산식 · 책임연구원 : 2/(n+1)% · 공동연구원 : 1/(n+1)%
나. 산업체 연구실적	1천만원당 7.5%	· n은 총 연구원 수(연구보조원 제외)
다.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재정지원사업 등 기관) 수주 기여		· 1/(n+1)%
라. 산업체 과제 수주 기여	1천만원당 2.5%	· n은`총 연구원 수(연구보조원 제외)
	1건당 60 %	평가대상기간 내 설립 상한 100%(청업 인정량 및 매출액 완료되어 벤처기업 인정량 합산) 인증을 받은 창업 기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 정」제54조에 따라 겸직허기를 받
5. 교원창업 실적	5천만원당 5%	상한 40% 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예비벤처 업적신청 직전년도 매 기업은 제외) 출액(창업 시점부터 5-공동사업자등록: 1/n(n은 등록원에 명시된 총 인원) -1기업당 1회 신청 한

[참고]

- 1. 산학연구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3시간, 산학교육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9시간
- 2. 논문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25% 까지만 인정
- 3. 산학연구중점교원은 "4. 교외 연구비" 실적만 승진요구 총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산학교육중점교원 은 "3. 산학교육" 실적을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50% 이상이어야 함.
- 4. "3. 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의 "기관(기업) 발굴" 실적은 발굴한 기관(기업)에 학생을 1명 이상 매칭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굴 기관(기업)에 최초 1명 매칭 시에는 "기관(기업)-학생 1명 매칭" 지표도 중복 인정함. "기업(기관) 취업 지도"의 "기관(기업)-학생 1명 취업"지표는 "기관(기업) 발굴", "기관(기업)-학생 1명 매칭"지표 실적과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별표 6] (신설 2020. 8. 31., 개정 2023. 5. 12.)

외국인 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인정률	비고		
1. 해외 교류(학생 및 연구)				
a. 해외 컨퍼런스 발표자	1건당 3%	- 발표자 5개국 이상의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b. 해외 컨퍼런스, 세미나 교내 유치	1건당 20%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 포함		
c. 해외저명 학술지 편집위원	1건당 10%	- JIF 및 SJR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함 - 국내학술지는 4%		
d. 학생참여 해외 워크샵	1건당 10%			
e. 해외대학과 MOU	1건당 20%	-학생 교류 조건 포함 (미 포함시 1/2)		
f. 해외공동학위 개설	1건당 50%			
g. 해외공동학위 운영	연간 20%	-해외 공동학위 개설 후 운영 책임자		
h. 공동 전시회 및 경진대회유치, 운영	1건당 20%			
i. 총괄 코디네이터	1학기당 20%	-국제교류처에 한함 (추후 역할명시)		
j. 외국인학생 전용 학위프로그램 개설	1건당 50%			
k. 외국인학생 전용 학위프로그램 운영	1학기당 20 %	-운영 책임자		
2. 교육				
a. 초과강의	1학점당 2%	-초과강의수당을 받지 않는 학점으로 최대 연 최대 30% 이내		
b. 학생 튜터링 및 특강	1회당 1%	-1학년 대상 전공영어 세미나 등등		
c. 학생해외 진학 및 취업상담	1명당 1%	-추천장 및 해외인턴 등		
3. 산학				
a. 해외대학과의 joint capstone design	1학기당 10%	-화상을 통한 지도, 졸업작품도 포함		
b. 해외연구펀드 연결	1건당 5%	-교내교수와 해외교수, 연구비 연결		
c. 해외학생 인턴쉽을 위한 기업발굴	1기업당 5%	-해외기업에 한함		

- ※ '외국인 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의 적용 대상은 [별표 2]의 '외국인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교원을 말한다.
- ※ [별표 4] 일반전임교원의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서 '3. 산학교육'과 '4. 교외연구비'의 경우 해외 실적으로 인정 시 [별표 4] 인정률의 1.5배로 한다.
- ※ 해외교류, 교육, 산학실적은 승진임용 등에서 총 연구실적의 인정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논문은 승진요구실적의 40%까지만 인정한다.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권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을 "갑"이라 하고, 임용예정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 (갑)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제2조(계약기간) 임용계약기간은 <u>년 월 일</u>부터 <u>년 월 일</u>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제3조(소속 및 계약직급) ①"을"의 소속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____대학(원) 학부(과) 소속으로 한다.
 - ② 을"의 계약직급은 ____로 한다.
- 제4조(보수 지급) "갑"은 "을"에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 제5조(근무조건 등) ①"을"은 계약기간 동안 주당강의시간, 학술연구활동, 학사업무 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든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을"은 계약기간 중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업적 및 성과) ①"갑"은 "을"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을"이 계약기간 중 국가 또는 그 밖의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여 자문· 용역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현 계약 기간 동안 수행한 소정의 업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갑"은 제출된 업적을 심사한 후,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 ③"을"은 "갑"과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 ④"을"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의 승진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갑"은 "을"을 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및 조정) ①"을"은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갑"은 이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하여 "을"에게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 ③대학인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을"의 신청이 "이유있음"을 가결하였을 경우 "을"은 이의신청결과통보서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대학인사위원회는 필요시 또는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 2. 계약기간 중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강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임용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②"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권리를 가지며,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국

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모든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등)에 따른다.

- ③"갑"과 "을"은 계약조건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조건의 일부 (계약기간은 제외)를 변경할 수 있다.
- ④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2통의 계약서에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월 일

- (갑)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인)
-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29., 2017. 12. 29., 2018. 9. 3., 2023. 5. 12.)

일반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

- 2018년 4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된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 -

평정하목 평정기준 및 점수		12년 F27		ਲੀ ਨੀ ਮੀ.ਮੀ
4084	평정기준	점수	평점	평정방법
1. 연구실적	총연구실적+(200%이상) 총연구실적+(100~200%미만) 총연구실적+(0~100%미만)	40 30 20		○ 총연구실적 -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 별표 2의 "총 연구실적"을 적용 - 제35조제1항제2호 ~ 제4호 해당자 : 300%
2.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 어 평가한다. ○정년보장임용 예정일부터 기산 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 한다.
3.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4. 근무자세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 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
5. 상별(가감점)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장관표창 경징계 중징계	10 7 5 -5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 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 다. 단,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7. 12. 29., 2018. 9. 3., 2023. 5. 12.)

일반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

- 2018년 4월 1일 이후 두 번째 승진임용된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 -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평가분야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物/元年	87887	평정기준	점수	160日	* ক' ক' ক' ন্দ্ৰ
1. 교육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 어 평가한다. ○정년보장임용 예정일부터 기산 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 한다
2. 연구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300% 이상) 총 연구실적+(200% 이상) 총 연구실적+(100% 이상) 총 연구실적+(0~100% 미만)	40 35 30 25		○ 총연구실적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 별 표 2의 "총 연구실적"을 적용 -제35조제1항제2호 ~ 제4호 해당자 : 300%
3. 봉사	봉사실적	5점 이상 5점 미만 4점 미만 3점 미만 2점 미만	10 8 7 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 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 른 교원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 방법의 봉사영역 점수로 산출하 되, 심사대상자의 최근 3개년 봉 사평균점수 실적을 활용한다.
4. 직무태도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 8 7 6 4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 71 41±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 8 7 6 4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 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
5. 상벌(기김점)	훈·포장 등	훈·포장(5),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장관표창(1) 정직(-5), 감봉(-3), 견책(-1)	5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처 분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 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만,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	점계	105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8. 9. 3., 개정 2023. 5. 12.)

산학협력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ついけん し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

평가분야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物介を中	#888 4	평정기준	점수	で出	# % % শ ল
1. 교육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20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 어 평가한다. ○정년보장임용 예정일부터 기산 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 한다
2. 연구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300% 이상) 총 연구실적+(200% 이상) 총 연구실적+(100% 이상) 총 연구실적+(0~100% 미만)	50 45 40 35		○ 총연구실적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 별 표 2의 ""을 적용 -제35조제1항제2호 ~ 제4호 해당자 : 300%
3. 봉사	봉사실적	5점 이상 5점 미만 4점 미만 3점 미만 2점 미만	10 8 7 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 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 른 교원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 방법의 봉사영역 점수로 산출하 되, 심사대상자의 최근 3개년 봉 사평균점수 실적을 활용한다.
4. 직무태도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 8 7 6 4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F. 91912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 8 7 6 4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 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
5. 상벌(기감점)	훈·포장 등	훈·포장(5),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장관표창(1) 정직(-5), 감봉(-3), 견책(-1)	5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처 분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 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만,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	- 점계	105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6. 29., 2017. 12. 29., 2018. 9. 3.)

일반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2018년 1월 1일 이전 신규임용자 -

	소속 :	직급 :	성명 :
--	------	------	------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3/8/9	평정기준	점수	70 7	37878 14
	400% 이상	40		
1. 연구실적	300% 이상 400% 미만	30		
	200% 이상 300% 미만	20		
2.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 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매우 우수	15		
	우수	13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3. 인격 및 품위	보통	11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다소 미흡	9		위원이 평정한다.
	미흡	7		
	매우 우수	15		
	우수	13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4. 근무자세	보통	11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다소 미흡	9		원이 평정한다.
	미흡	7		
5. 상벌 (가감점)	훈·포장: 10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장관표창: 5 경징계: -5 중징계: -10 미준수 주당 책임강의시간 수× (-1)점: 최대 5점 감점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 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단, 감점은 해당 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동안 준수하지 못한 주당 책임강의 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당 1점을 감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7. 12. 29., 개정 2018. 9. 3., 2023. 5. 12.)

일반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평가분야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	্ ক পেপন	평정기준	점수	*8°H	শ্ব'ঠ ঠ ভ্র
1. 교육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 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 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 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책임강의 시간	책임강의시간+(6시간 이상) 책임강의시간+(0~6시간 미만) 책임강의시간 미만	5 3 1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 실 적으로 평가한다.
2. 연구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200% 이상) 총 연구실적+(200% 미만) 총 연구실적+(0~100% 미만)	40 30 20		○ 직급별 연구기준 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총 연구 실적은 직급별 승진요구실적의 1/2 을 의미함)
3. 봉사	봉사실적	5점 이상 5점 미만 4점 미만 3점 미만 2점 미만	10 8 7 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방법의 봉사 영역 점수로 산출하되, 심사대상자 의 최근 3개년 봉사평균점수 실적을 활용한다.
4. 직무태도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 4 3 2 1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4. 47412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 8 7 6 4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
5. 상벌(가감점)	훈·포장 등	훈·포장(5),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장관표창(1) 정직(-5), 감봉(-3), 견책(-1)	5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처분받 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 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	- 점계	105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8. 9. 3. 개정 2023. 5. 12.)

산학협력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2018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평가분야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8/PE	3 884	평정기준	점수	*8名	- ক'ঠে ঠ ব
1. 교육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20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 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 한다. ○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 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2. 연구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200% 이상) 총 연구실적+(200% 미만) 총 연구실적+(0~100% 미만)	30 20 10		○직급별 연구기준 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총 연구 실적은 직급별 승진요구실적의 1/2 을 의미함)
3. 봉사	봉사실적	5점 이상 5점 미만 4점 미만 3점 미만 2점 미만	10 8 6 4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 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방법의 봉사 영역 점수로 산출하되, 심사대상자 의 최근 3개년 봉사평균점수 실적을 활용한다.
	공동연구 노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0 16 12 8 4		○관련 분야 교수님들과 공동연구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해당 부서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4. 직무태도	대학 기여도 (학과,단과대학포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0 16 12 8 4		○ 학과에서 초빙한 교원은 학과에서 평가하고, 학과 이외에서 초빙한 교 원은 해당 교원의 대학 기여도를 여 러 대학의 학장과 일반대학원장이 평가한다. (모든 대학장과 일반대학 원장이 평가 가능)
5. 상벌(가감점)	훈·포장 등	훈·포장(5),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장관표창(1) 정직(-5), 감봉(-3), 견책(-1)	5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처분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 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	점계	105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6. 29.)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행정·경영 겸무형 교원 -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3 887	평정기준	점수	る日	শ্ব প ব স্থা
1. 대학에의 발전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40 30 20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2.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 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다.
3.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이 평정한다.
4.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5. 상벌 (가감점)	훈·포장 : 10 대통령표창 : 7 국무총리·장관표창 : 5 경징계 : -5 중징계 : -10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 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단, 감점은 해당 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10.)

겸직 허가 신청서

소속	
직 급	
성 명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직무	※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겸직기관 근무시간	주시간
겸직기관 보수내역	
	직 급 성 명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직무 겸직기간 겸직기관 근무시간 겸직기관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당 기관의 겸직요청서 1부.

-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회칙 사본 1부.
- 4. 사업자등록증 1부.
- 5.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1부(벤처기업에 한함).
- 6. 창업기업확인서 1부(창업기업에 한함).
- 7.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에 한함).
- 8. 특화선도기업선정서 1부(특화선도기업에 한함).
- 9. 서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겸직 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동 규정 제8조에 해당되어 겸직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겸직 허가 추천서

	소 속										
신 청 자 인적사항	직 급										
	성 명										
	겸직기관										
겸직사항	겸직직위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겸직기관의 적합성										
	허가의 필요성										
추천의견	교육·지도 및 연구 지장여부										
	소속 학부(과)장, 주임교수의 의견										
위와 같이 겸직허가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겸직허기	F 신성서 1부.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울과학기술디	H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 7. 2.)

[별지 제9-1호서식] (삭제 2021. 7. 2.)

[별지 제9-2 서식] (삭제 2021. 7. 2.)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1. 7. 2.)

[별지 제10-1호서식] (삭제 2021. 7. 2.)

[별지 제10-2호서식] (삭제 2021. 7. 2.)

석좌교수 재임용 심사 평정표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0 0 .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37897	평정기준	점수	70 72	ብ ይ ይ ይ
1. 대학에의 발전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40 30 20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2.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 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다.
3.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이 평정한다.
4.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5. 상벌 (가감점)	훈·포장 : 10 대통령표창 : 7 국무총리·장관표창 : 5 경징계 : -5 중징계 : -10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 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단, 감점은 해당 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6. 29., 2019. 7. 22., 2022. 4. 20.)

초빙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0 0 0 1	평정기준	점수	ОП	0 0 0 6	
1. 대학에의 발전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40 30 20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2. 강의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30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 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폐강 등의 사유로 강의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배점 (30점)×0.6)를 부여한다.	
3.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이 평정한다.	
4.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5. 상벌 등 (가감점)	훈·포장: 10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장관표창: 5 경징계: -5 중징계: -10 학교 지정교육(폭력예방교육 등) 미이수: 건당 -2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 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단, 감점은 해당 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6. 29., 2019. 7. 29.)

초빙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산학협력 전담 초빙교원 -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점	평정방법
ক' ১ ও ল	평정기준	점수	る。日	শু ও ও ন
1. 대학에의 발전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2. 산학협력실적	우수 보통 미흡	40 30 20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 정한다.
3. 인격 및 품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교수로서의 인격,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이 평정한다.
4.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5 13 11 9 7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 원이 평정한다.
5. 상벌 등 (가감점)	훈·포장: 10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장관표창: 5 경징계: -5 중징계: -10 학교 지정교육(폭력예방교육 등) 미이수: 건당 -2	10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 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단, 감점은 해당 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10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